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연 월 일	2023. 3. .

법제처 심사 전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범위를 종전에는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차량으로 정하던 것을, 전속운송 계약에 따라 6년 이상 운행한 집·배송 차량의 대폐차 범위를 2.5톤 이하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을 완화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속 운송계약이 6년 이상인 경우 최대 적재량 2.5톤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폐차를 허용한다.

제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속 운송계약이 6년 이상인 경우 최대 적재량 2.5톤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폐차를 허용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폐차를  
허용한다.